

GS인증(SW 품질인증)과 (공공기관)우선구매제도

TTA 시험인증연구소 SW시험인증팀 팀장 신 석 규

1. 서언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는 약 98%가 중소·벤처기업으로 영세하여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여도 마케팅 능력 부족과 낮은 제품 인지도 등을 극복하지 못하여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GS(Good Software)인증과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이다. GS인증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에 대한 품질을 인증해 주고,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해 줌으로써 국내 SW산업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다음 장에서 GS인증과 우선구매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 GS(Good Software) 인증

GS인증제도는 국산 SW제품의 품질 향상을 통한 국내 SW산업 활성화를 위해 SW산업진흥법 제13조에 의거, 2001년부터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SW시험인증센터가 국제표준을 준용한 한국형 평가모델에 따라 테스트를 수행하여 품질인증기준을 통과한 SW에 인증을 부여하는 국가공인 인증제도이다.

SW업체를 중심으로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인증제도의 필요성이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시험·인증을 위한 설비투자 및 평가기술 개발 등에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소요되고, 국내 시장 여건상 수익 모델이 되지 않아 민간 기업에서 포기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제3자 시험·인증 서비스 제도 도입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산업계 및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등에 품질인증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정보통신부장관 고시를 통하여 1999년 9월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제3자 시험·인증기관으로 SW시험센터를 설립하였으며, 2001년도에 TTA로 조직을 이관하여 현재까지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GS인증제도와 관련된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1) 제13조(품질인증)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 1) 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 2) 제10조(품질인증의 실시)

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규칙

- 1) 제4조(품질인증의 신청)

- 2) 제5조(인증서의 발급 등)

- 3) 제6조(인증마크)

라.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0-81호 소프트웨어품질인증기준(2000. 10. 31)

SW 시험·인증 대상은 일반 패키지 소프트웨어에 서부터 ERP, CRM 등 기업용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사용자 매뉴얼, 제품설명서 등 관련 문서 일체를 시험·인증대상에 포함시켜 제품을 평가하고 있다. 주요 시험·인증 대상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다.

가. 모바일 소프트웨어

나. 임베디드(Embedded) 소프트웨어

다. 컴포넌트(Component) 소프트웨어

라.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소프트웨어

마. 유틸리티(Utility) 소프트웨어

바. 게임(Game) 소프트웨어

사. 통신용 소프트웨어

아. 교육용 소프트웨어

자. 기업용 소프트웨어

차. 주문형(SI) 소프트웨어

카. 보안용 소프트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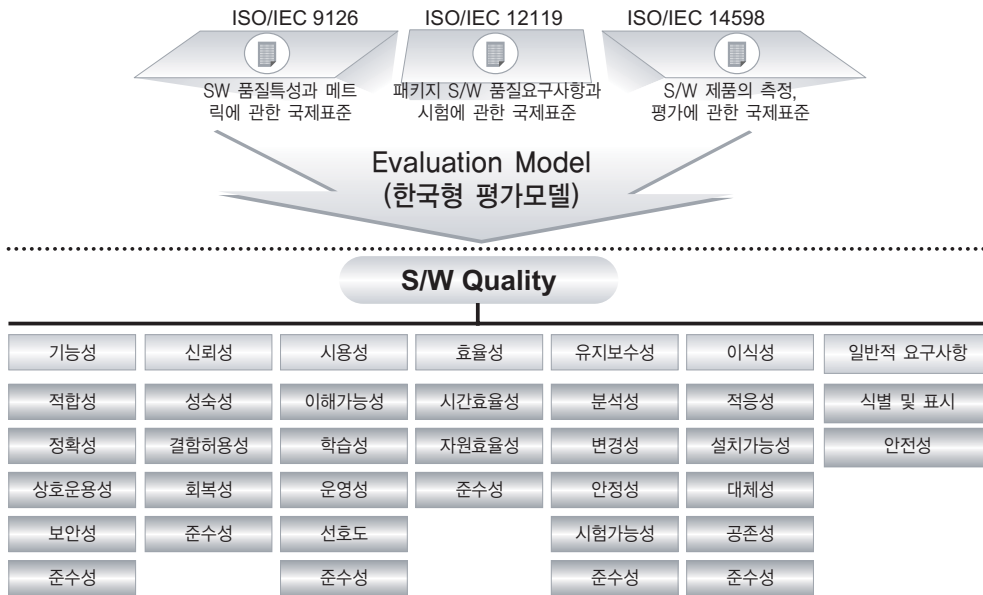
타. 미들웨어(Middleware) 소프트웨어

파. 사무용 소프트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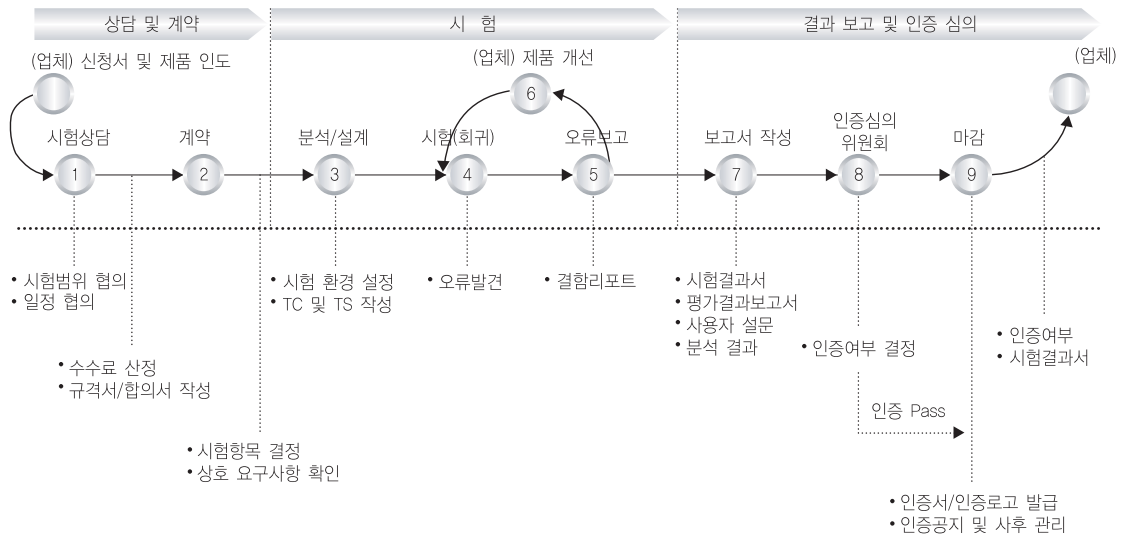
하. e-Biz 소프트웨어 등 소프트웨어 전 분야 대상

시험·인증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는 평가모듈은 SW 품질평가 국제표준인 ISO/IEC 9126, 14598, 12119 등을 준용하여 개발된 한국형 평가모듈로, 7개 주특성과 29개 부특성, 89개의 세부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W 유형에 따라 200~10,000여 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개발하여 평가에 적용하고 있다.

시험 과정에서는 구현된 기능의 정상동작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 테스트 외에 SW 분야별 관련 국제 기준에 맞는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성능, 연동, 표준적합성, 보안성, 상호운용성 등의 평가를 제품의 크기 및 종류에 따라 2~8주 동안 수행하고 있다. 1차 시험 후 시험결과서만을 제공하는 외국 시험기관과 달리, 평균 4회, 최대 12회의 테스트를 수행하면서 결함 수정 기회를 제공하여 제품의 품질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시험 수수료의 60%를 감액하는 등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GS시험·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다.



〈GS인증 품질평가 모델〉



〈GS 시험·인증 절차〉

인증심의회위원회에서 인증이 결정될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인증마크)에 규정된 국가 공인 SW품질 인증마크를 발급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품질인증마크〉

GS시험·인증 서비스 제공으로 국산 SW제품이 단기간에 획기적인 품질 개선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품의 신뢰성 제고 및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인증 획득업체의 신뢰성 및 인지도 향상으로 마케팅 비용 절감, 매출의 증대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GS인증 획득으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 체결 및 등록(조달 법령 개정, 2004. 8)

나. GS인증제품 우선구매제도 시행

- 1) '중소 SW 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 운영규정' (정보통신부 공고 제2005-22호, 2005. 4. 16)
-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18907호, 2005. 6. 30)

다.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시 GS인증제품 성능검사 면제(중소기업청, 2005. 7. 1)

라. 건설교통부 GIS 소프트웨어 납품시 인증 획득 의무(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286호, 2003. 11. 25)

마. 경찰청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납품시 인증 획득 의무(경찰청 공고 제2004-6호, 2004. 6. 11)

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면제(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4호, 2004. 1. 28)

사. 행자부 전자문서시스템, 자료관시스템 인증 의무

아. 교육부 교육용 소프트웨어 납품 심사시 심사 면제

자. 정보통신부 유망 중소기업 선정 심사시 가산점 부과

차. 병역특례업체 지정 심사시 가산점 부여 (2005. 7. 1)

카. 전자정부 기술제안서(RFP) 기술 평가시 GS 인증제품은 가산점 부여

이러한 시험·인증 효과로 인해 서비스를 시작한 2001년 이래로 시험·인증 실적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관 판로 지원을 통해 시장을 창출하고, SW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매자 면책 등의 제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정보통신부는 GS인증제품의 우선구매제도 시행을 위해 2004년 말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적용 대상에 GS인증제품을 포함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지난 4월 16일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정보통신부공고 제2005-22호)’을 고시하여, 중소기업 SW가 GS인증을 획득하였을 경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중소기업청은 2004년 말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시 성능인증, 성능보험 및 구매자 면책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후속 법령 개정을 통해

(2005년 11월 28일 현재)

	2001	2002	2003	2004	2005	총계
GS 시험	7	99	189	171	261	727
GS 인증	6	27	31	54	120	238

SW제품 구매자들 사이에서 SW 품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GS 시험·인증 수요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3. 우선구매제도

중소 SW기업의 경우 기업 인지도가 낮고, 공공기관의 납품 실적 요구와 SW 고유의 선점 효과 등으로 인해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도 규모의 영세성 및 상품화 능력이 취약하여 시장 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우수 SW제품에 대한 공공기

제한·지명경쟁 입찰 자격 우선 부여 등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한 후, 지난 7월부터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하였다.

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나 신기술인증제품 등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GS인증제품의 경우 성능검사를 면제하고 성능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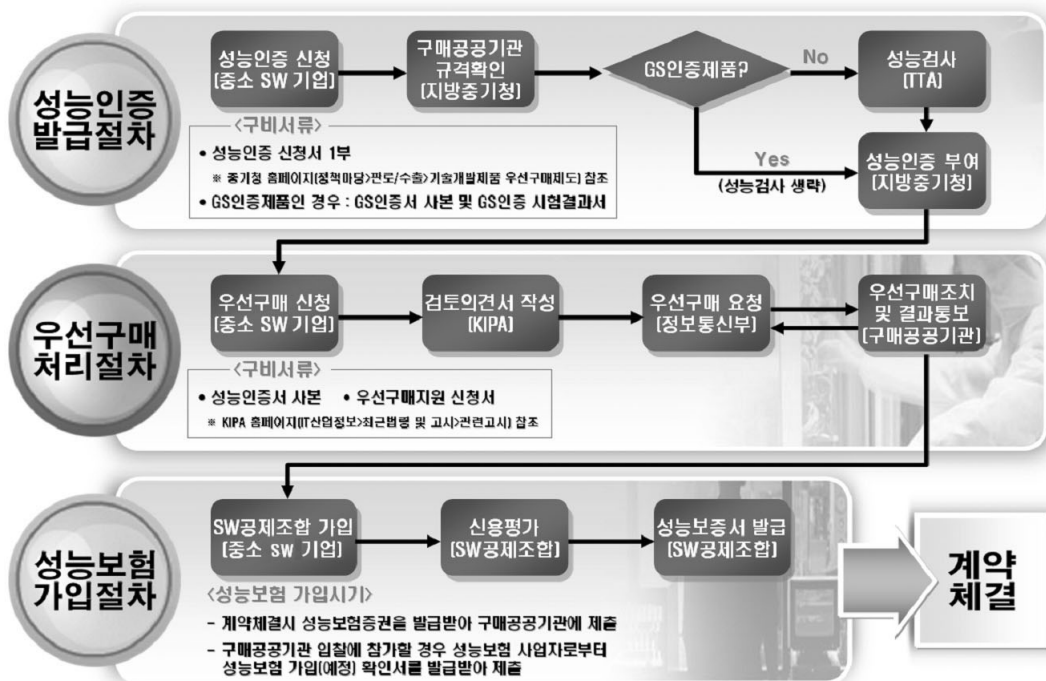
성능보험제도는 중소기업이 생산·제조한 기술개발 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공공기관에 납품된 후, 그 제품의 성능저하로 발생하는 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

을 담보하는 제도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기계공제조합, 삼성화재, LG화재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성능보험 가입제품의 성능 저하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에게 면책을 부여하고,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GS인증제품의 우선구매제도 처리는 GS 인증을 받은 중소 SW 기업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총 3,075개 공공기관 중 제품의 수요가 예상되는 대상기관을 선정,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에 신청하면 KIPA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에 제출하며, 정보통신부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해 해당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조치를 요구하고, 해당 공공기관은 우선구매 가능 여부를 판단해 그 결과를 정보통신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GS인증제품의 우선구매제도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GS인증제품 우선구매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통부 지식정보센터의 인터넷 우체국쇼핑몰구축사업, 국회사무처 국회재정분석시스템구축사업, 서울시청 지리정보안솔루션 도입 등의 발주기관 제안요청서(RFP)에 GS인증제품을 명시하는 등 공공기관에서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TTA**



〈GS 인증제품의 우선구매제도 처리절차〉